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('98. 7. 1)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
-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 정비
-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개정(안 제1조)
- 다대동 96 - 1번지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다대동 1548 - 12번지의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함(안 제2조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5조 (조례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(시설의 설치)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”를 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”로 한다.

제2조중 제3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 - 1번지에 둔다.
4.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 - 12번지에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</p> <p>제2조(명칭과 위치)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제1조(목적)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</p> <p>제2조(명칭과 위치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 - 1번지에 둔다.</u></p> <p>4. <u>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 - 12번지에 둔다.</u></p>